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5. 1.

양형위원회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혁
 - 2009. 4. 24. 설정되어 2009. 7. 1. 시행된 후, 2023. 4. 24. 수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까지 총 7차례 수정되었음
- 수정 배경
 - 성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특별히 높은 범죄군으로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위해 미설정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시가 필요함
 - 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성폭력처벌법 제 1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피보호·피감독자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에 대하여도 함께 설정하기로 함
 - 비교적 최근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위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됨

-
- 2018. 10. 16. 형법의 개정·시행으로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제303조 제1항)의 법정형이 상향됨(5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하의 징역)
 - 2018. 10. 16.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시행으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제10조 제1항)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2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시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제11조)의 법정형도 상향되었음(1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

■ 수정 경과

-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4. 6. 17. 제132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2025. 1. 13. 제136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2025. 1. ~ 2025.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5. 2. 17.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5.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이하 여백)

II.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고려 사항

- ▣ 범죄의 발생 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대상을 결정함
- ▣ 다만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에 포함함

2. 설정 범위

- ▣ 기존 설정범죄에 더하여,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위해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같은 법 제10조 제1항)를 설정 범위에 추가함
- ▣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더욱 중한 범죄인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형법 제303조 제1항)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 다음의 범죄를 새로이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성폭력 처벌법	§ 11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3년 ↓, 3,000만 원 ↓
	§ 10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3년 ↓, 1,500만 원 ↓
형법	§ 303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7년 ↓, 3,000만 원 ↓

III.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2. 유형 분류안

가. 논의의 전제

-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유형 분류안 설명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대유형 1, 중유형 나.에 소유형 1로 추가

- 처벌 취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제한만 있을 뿐,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추행, 즉 단순추행죄에 해당함(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추행이라는 행위태양을 공유하는 대유형 1(일반적 기준), 중유형 다[강제추행죄(13세 이상)]에 포섭함으로써,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 범위가 크지 않고, 중유형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음
-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중밀집장소 추행			
12	일반강제추행			
23	청소년 강제추행			
3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4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56	특수강도강제추행			

▣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 대유형 1, 중유형 다.에 소유형 1, 2로 추가

- 대유형 1(일반적 기준), 중유형 다[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을 추가하더라도 이질적이지 않음
- 대유형 1, 중유형 다.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죄와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 등이 유사하

므로, 양형인자표를 공유할 수 있음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무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피해자의 특성,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13	의제추행			
24	의제간음/강제추행			
35	유사강간			
46	강간			

(이하 여백)

IV. 성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1. 고려사항

▣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함
-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2. 성범죄

가. 유형의 정의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이하 여백)

나. 형량 분포¹⁾

▣ 공중밀집장소 추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0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수	1	23	1	102	1	49	1	21	28	2	1	1	7	1	2	1	242	8.05
	비율	0.4	9.5	0.4	42.1	0.4	20.2	0.4	8.7	11.6	0.8	0.4	0.4	2.9	0.4	0.8	0.4	100.0	

- 법정형은 3년 이하이고, 평균형량은 8.05월임
- 최하한은 3월, 최상한은 30월임
- 빈도는 6월(42.1%), 8월(20.2%), 12월(11.6%) 순임

▣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0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수	-	8	1	70	1	64	-	35	47	1	-	2	10	-	5	-	244	9.16
	비율	-	3.3	0.4	28.7	0.4	26.2	-	14.3	19.3	0.4	-	0.8	4.1	-	2.0	-	100.0	

- 법정형은 3년 이하이고, 평균형량은 9.16월임
- 최하한은 4월, 최상한은 24월임
- 빈도는 6월(28.7%), 8월(26.2%), 12월(19.3%) 순임

1)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확정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분석Ⅲ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추가)」, 90면].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30
형법 제303조 제1항	수	-	-	-	-	-	-	-	1	-	-	-	-	2	-	3	-	6	19.67
	비율	-	-	-	-	-	-	-	16.7	-	-	-	-	33.3	-	50.0	-	100.0	

- 법정형은 7년 이하이고, 평균형량은 19.67월임
- 최하한은 10월, 최상한은 24월임
- 빈도는 24월(50%), 18월(33.3%), 10월(16.7%) 순임

다. 법정형 동일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형 3년 이하 유사 범죄(주로 개인적 범익 침해 범죄)

유형	법령	감경	기본	가중
일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 2, 3호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 8월	6월 - 1년	8월 - 2년
재물손괴 등	형법 제366조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일반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 징역형 7년 이하 유사 범죄(주로 개인적 범의 침해 범죄)

유형	법령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유인·인신 매매 등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1, 2항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2월 - 10월	4월 - 1년6월	6월 - 2년6월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누범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2월 - 1년2월	4월 - 1년10월	6월 - 2년4월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 8월	6월 - 1년	8월 - 2년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가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유기치상·중유기치상·영아유기치상·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	형법 제362조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점유강취/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1, 2항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 8월	6월 - 1년2월	8월 - 2년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 8월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누범주거침입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4월 - 1년	8월 - 1년4월	1년2월 - 3년

라. 검토

1) 공중밀집장소 추행

▣ 다음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 중유형 나.에 소유형 1로 추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중밀집장소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12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3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3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6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법정형(징역 3년 이하)이 동일한 일반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으로 조정함
 - 일반 스토킹범죄는 특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특징으로 함. 장소의 성격상 죄질의 중대성에 한계가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이보다 상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정형이 동일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아래의 중간값은 일응 양형기준상 보편적 형량범위라고 할 수 있음 ⇨ 설정한 권고 형량범위가 중간값과 동일하여 기존 양형기준의 체계에도 부합

함

감경	기본	가중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현행 형량 분포의 평균형량 및 3순위의 최빈값까지 모두 기본영역에 포함됨

2) 피보호·감독자 추행 및 간음

■ 다음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 중유형 다.에 소유형 1, 2로 추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3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4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5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6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피보호·감독자 추행

-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동일한 일반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양형통계상 2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으로 조정함
- 설정한 권고 형량범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형이 동일한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중간값과 동일하여 기존 양형기준의 체계에도 부합함

- 현행 형량 분포의 평균형량 및 3순위의 최빈값까지 모두 기본영역에 포섭됨

■ **피보호·감독자 간음**

- 의제추행(소유형 3)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궁박 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반면,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소유형 2)은 피해자가 궁박 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의제추행과 사이에는 권고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함
- 10월에서 2년까지 분포하여 있는 양형실무를 포섭할 수 있음

(이하 여백)

V.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1. 성범죄군 전체

- ▣ 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에서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함

2. 공중밀집장소 추행

가. 개요

- ▣ 기본적으로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대 유형 1, 중유형 나)의 양형인자표를 공유하기로 함
- ▣ 공중밀집장소 추행(소유형 1)의 추가로 인한 양형인자표상 괄호 부분의 번호변동을 반영함

나. 일반가증인자(행위)

-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의 괄호 안에 1유형을 추가함

구분		감경요소	가증요소
일반 양형인자	행위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 유형1, 4, 5, 6유형)

- 강제추행죄 중 청소년이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닌 유형에서 일반가증인자로 설정하고 있고(제4, 5, 6유형), 공중밀집장소 추행도 청소년

년이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한 판결이 다수 존재함

다.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3, 56 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1, 4, 5, 6유형)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가. 개요

- 기본적으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대유형 1, 중유형 다)의 양형인자표를 공유하기로 함
-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소유형 1, 2)의 추가로 인한 양형인자표상 괄호 부분의 변호변동을 반영함

나. 특별가중인자(행위)

- ‘윤간’, ‘임신’의 괄호 안에 각 2유형을 추가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간(2, 4유형2, 4, 6유형)● 임신(2, 4유형2, 4, 6유형)

- 사안에 따라서는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서 윤간 또는 간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

(이하 여백)

다. 특별감경인자(행위)

-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괄호 안에 1유형을 추가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 형1, 3, 4유형)	

-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추행을 구성요건적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함

라. 일반가중인자(행위)

- ▣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의 괄호 안에 2유형을 추가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2, 4, 6유형)

-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함(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참조)
- 해당 양형인자는 위와 같은 경우 추가되는 불법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함

마.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에 ‘(3 내지 6유형)’ 을 추가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 인적 신뢰관계 이용(3 내지 6유형)

● 정의규정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보호·피감독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함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은 거의 대부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이중평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양형인자의 적용대상에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을 제외함

바.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1, 3,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6유형) ○ 운간(2, 4유형2, 4, 6유형) ○ 임신(2, 4유형2, 4, 6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2, 4, 6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3 내지 6유형)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여백)

VI. 성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운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